#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750

발의연월일: 2021. 7. 26.

발 의 자:백혜련・이해식・오영환

남인순 · 김남국 · 박성준

이형석 • 이성만 • 임호선

이원택 • 이동주 • 서동용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가 생 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세제 혜택을 주고 있음.

그런데 청년층은 중·장년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자산을 가지고 있고, 최근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주택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층에 대하여는 취득세 경감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가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70을 경감하도록 하면서, 생 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 일까지로 연장하여 주택 구입에 따른 국민의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 임(안 제36조의3제1항).

#### 법률 제 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 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50 (취득자가 34세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	대한 취득세 감면) ①
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	
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동거인은 제외하고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	
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	
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	
서 "1가구"라 한다]이 주택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	
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	
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	
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	
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	
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	
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 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 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1년 1 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 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20세 미만인 경우 또는 주택을 취득 하는 자의 배우자가 취득일 현 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 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 1. (생략)
- 2.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
  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다.

② ~ ⑥ (생 략)

<u>2024년</u>
12월 31일
1. (현행과 같음)
2
<u>100분의 50(취득자가</u>
34세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
<u>의 70)</u>
② ~ ⑥ (혀해과 간은)